#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431

발의연월일: 2024. 12. 12.

발 의 자:주철현・어기구・조계원

이건태 · 안호영 · 정성호

천하람 • 백승아 • 황명선

문금주 • 모경종 • 한정애

송기헌 의원(13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김치의 세계화를 촉진하며 농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세계 김치연구소 설립 조항을 두어 김치종주국의 위상제고, 김치의 연구·전시·체험 등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김치 무역수지는 중국산 김치 위생 논란과 코로나19 유행의 영향으로 흑자를 기록한 2021년을 제외하고 중국산 저가 김치에 밀려 2010년 이후 매년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김치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지키고 무역수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김치산업 진흥 정책을 시 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김치산업 관련 업무가 세계 김치연구소· 농수산식품유통공사·한식진흥원 등으로 분산되어 업무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으며, 각 기관들에 배치된 진흥 업무 전문인력도 부족한 실정임.

이에 김치산업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컨트롤타워로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김치산업진흥원을 설립함으로써 김치산업 진흥 정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김치산업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며, 나아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김치산업진흥법에 규정된 김치산업 진흥을 책임지고 기획할 총괄집행 전담기구인 김치산업진흥원을 설립하여 김치산업 진흥 기반 조성을 위한 조사·연구, 실태조사, 정보체계 구축, 진흥계획 및 사업 수립·집행, 김치산업의 국내외 확산을 위한 활성화연구, 대외협력, 홍보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정부는 진흥원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진흥원의 사업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면 사업에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지시·명령 등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확히 함(안 제25조 신설).

#### 법률 제 호

#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를 각각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로 하고, 제3장에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5조(김치산업진흥원의 설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김치산업의 진흥·발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김치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③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김치산업 진흥 기반 조성을 위한 조사·연구, 실태조사, 정보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업
  - 2. 김치산업의 국내외 확산을 위한 활성화 연구, 대외협력, 홍보사업
  - 3. 김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등에 관한 사항
  - 4. 김치산업 진흥을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필요한 사업의 기획, 집행 등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항과 김치산업 진흥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 ④ 정부는 진흥원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진흥원의 사업을 지도·감독하며, 필요시 진흥원으로 하여금 보고를 하게 하거나 진흥원에 지시·명령 등을 할 수 있다.
- ⑥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김치산업진흥원의 설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김치산업의 진흥・발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김치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김치산업 진흥 기반 조성을 위한 조사・연구, 실태조사, 정보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업 기반 확성의 국내외 확산을 위한 활성화 연구, 대외협력, 홍보사업 3. 김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등에 관한사항
	그 비계면 비 연한 계약 기

법에서 규정하는 필요한 사업 의 기획, 집행 등에 관한 사 항

-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 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항과 김치산업 진흥을 위하여 농림 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 ④ 정부는 진흥원의 설립・운 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 항 각 호에 따른 진흥원의 사 업을 지도 · 감독하며, 필요시 진흥원으로 하여금 보고를 하 게 하거나 진흥원에 지시 · 명 령 등을 할 수 있다.
- ⑥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 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을 준용한다.

제26조(조세의 감면) (현행 제25 조와 같음)

제27조(자료제출) (현행 제26조와 같음)

제25조(조세의 감면) (생 략)

제26조(자료제출) (생략)

제27조(권한의 위임·위탁) (생 제28조(권한의 위임·위탁) (현행

략)	제27조와 같음)
제2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	제2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
제) (생 략)	제) (현행 제28조와 같음)